

도시가스사업법 · 시행령 질의 및 회신

1. 옥외 공동구에 배관을 보호관 및 에어몰탈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매몰 또는 외부 PSC 개수로 내에 모래를 채워 매몰 설치 가능 여부

Q 옥외 공동구에 배관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① 공동구 내부에 보호관 및 에어몰탈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매몰하는 경우
- ② 외부 PSC 개수로 내에 모래를 채워 매몰 설치하는 경우
- ③ 불가시 보완방법

A 배관을 옥외의 공동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6 제8호가목(7)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질의한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질의한 ①의 경우와 같이 보호관 및 에어몰탈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배관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 별표 6 제8호가목(7) (가) 또는 (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질의하신 ① 또는 ②의 경우와 같이 매몰설치하는 강관에는 도시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장제12절의 규정에 의한 전기방식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동주택에 동시사용율을 적용한 유량 이상의 압력조정기 설치가능여부

Q 전체 세대수가 62세대인 공동주택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동시사용율을 적용한 유량 이상의 압력조정기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동시사용율 적용시

150m³/h, 동시사용율 미적용시 400m³/h)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6제8호가목(15)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중압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와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가스압력이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가 2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공동주택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여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공동주택등에 설치하는 압력조정기의 동시사용을 적용여부 및 유량산정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압력조정기의 처리능력은 피크시 가스소비량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아파트형 공장 주차장 상부를 관통하여 가스 배관 설치 적법 여부

Q ① 아파트형 공장 주차장 상부를 관통(천장 아래에 고정부착)하여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사용시설(배관)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하는 부분은?

A ①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가스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 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에 한하여 완성

검사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4. 특정가스사용시설 부지 내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비 KS품(비 검사품)인 신축이음용도의 관이음매 사용 여부

Q 특정가스사용시설(경기지방공무원 교육원) 부지 내에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 비 KS품(비 검사품)인 신축이음용도의 관이음매(볼/슬립조인트)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에 매설하는 관이음매의 재료는 KS표 시허가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아파트 세대내 주방의 상부장과 천장 사이의 공간에 내관 설치 가능 여부

Q ① 아파트 세대내 주방의 상부장과 천장 사이의 공간(약 5cm)에 내관(동관, 용접이음)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가스렌지에 연결하는 배관의 관경(15A, 또는 20A)을 도시가스사의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것인지

A ①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귀사의 경우와 같이 내관을 상부장과 천장 사이의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가스렌지에 연결하는 배관의 관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6.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이음매 없이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매설하여 설치 가능 여부

Q ①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이음매 없이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매설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②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이음매 없이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 내부 천정 속의 은폐된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이 공간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A ①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가스용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세대 내부에 매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동규칙 동표 동호 동목(2)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 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함)를 이음매(용접 이음매 제외)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 속의 은폐된 공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동 법령에는 이 공간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의 검지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7.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공동주택 주방의 싱크대 안에 퓨즈콕 설치 및 싱크대 외부에 퓨즈콕 설치 가능 여부

Q ①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공동주택 주방에 설치된 싱크대 안에 설치하고 싱크대 안에 퓨즈콕을 설치하거나 싱크대 안에 설치한 가스용금속플렉시블 호스에 나사접합으로 가스용금속플렉시블 호스를 다시 연결하여 싱크대 외부에 퓨즈콕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② 싱크대 안에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검지부, 차단부)를 설치하고 제어부를 싱크대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싱크대 안에 퓨즈콕의 설치가 가능한지?

A ①, ②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 금속플렉시블 호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싱크대 내

부공간에 배관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동 규칙 별표 7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퓨즈콕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싱크대 내부공간에 퓨즈콕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8.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를 천정판 밑면에서 배관의 하단부까지 70mm 이상 이격하고 1.5m 마다 행거 또는 받침재를 이용하여 설치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적법성 여부

Q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천정판 밑면에서 배관의 하단부까지 70mm 이상 이격하고 수평으로 1.5m 마다 행거 또는 받침재를 이용하여 설치, 배관(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의 손상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적법성 여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면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다.

여기서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전등 설치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천정에 못(또는 나사못 등)을 박는 경우 이 못에 의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가능한 못(또는 나사못 등)의 길이와 천정판의 재질 및 두께 등 전체적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KS D 3553에서 규정한 일반용 철못의 최대길이가 150mm임을 고려할 때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못박음 등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150mm 이내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9.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천장 마감부분과의 이격거리를 얼마로 하여야 하나

Q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2)의 규정 중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천장 마감부분과의 이격거리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면 배관은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는 천정 등에는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지만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정에 설치할 수 있음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전등 설치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의 이유로 천정에 못(또는 나사못 등)을 박는 경우 이 못에 의해 배관이 손상될 수 있는 곳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정에 설치하는 배관의 보호조치 실시여부는 천정에 사용 가능한 못(또는 나사못 등)의 길이와 천정판의 재질 및 두께 등 전체적인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KS D 3553에서 규정한 일반용 철못의 최대길이가 150mm임을 고려할 때 못박음 등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150mm 이내로 사료된다.

10. 가스배관을 주방에 설치된 상부장과 천장 사이의 공간 및 상부장과 벽 사이의 공간에 설치 가능 여부

Q 가스배관(내관)을 주방에 설치된 상부장과 천장 사이의 공간(5cm, 나사접합) 및 상부장과 벽 사이의 공간(8cm, 이음매 없음)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A 도시가스사용시설의 실내노출배관(강관)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

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방에 설치된 상부장과 천장 및 벽 사이가 환기가 양호하고 점검이 가능한 장소이어야 배관의 설치가 가능하다.

11.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 경우 천장면과의 이격거리가 5~7cm 유지 때에도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나

- Q** ① 오피스텔 세내내 천장에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면과의 이격거리가 5~7cm 유지되는 때에도 못박음으로부터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② 스테인레스강관을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적합 여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스테인레스강관, 동관(보호판으로 보호조치한 경우에 한한다),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로 못박음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못박음이 가능한 곳으로부터 15cm(KS D 3553에서 규정한 일반용 철못의 최대 길이) 이내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2. 오수관,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이 설치된 PD가 공동구에 해당 여부

- Q** ① 오수관,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이 설치된 PD(Pipe Duct)가 공동구에 해당하는지
 ② 질의 ①에서 공동구에 해당하는 경우 벽돌조적을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한 '벽'으로 인정하여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의 설치가 가능한지?

A ① 도시가스사업법령에는 공동구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참고로, 질의하신 장소와 같이 오수관·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설비를 공동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별도로 구획된 좁은 장소는 공동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②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1호라목(2)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금속플렉시블호스(못박음 등에 의하여 배관의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금속제의 보호관 또는 보호판으로 보호조치를 한 것에 한한다)를 이음매(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 없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벽·바닥에 설치할 수 있으나 공동구에는 배관을 설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

13. 공동주택 다용도실이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인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해당 여부

- Q** 첨부도면과 같은 공동주택 다용도실이 가스계량기 설치기준인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해당하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2호나목(10)의 규정에 의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라 함은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창문 및 환기구 등을 통하여 누출된 가스를 외부 공기로 환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주변에 외부 공기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창문 등의 환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상가 전용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를 가스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지상차단장치로 갈음할 수 있나

- Q** ① 지하상가(영업·냉난방용) 신축현장 여건이 지상은 50m 도로이고 대지경계 1m 이내에 도시가스사업자가 지하상가 전용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를 가스사용자가 설치해야 하는 지상차단장치로 갈음할 수 있는지?

② 질의 ①이 불가하다면 지하상가 계단실에 원격차단장치로 지상 차단장치를 갈음할 수 있는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층의 가스사용시설에는 지상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부지의 확보가 곤란한 부득이한 경우로서 지하상가 전용으로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차단장치가 가스사용시설 부근(대지경계 1m)에 설치되고 가스누출 등 위급 시에는 가스사용자도 가스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차단장치로 갈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5. 사용자가 불안감 때문에 호스설치방법 개선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지역관리소의 주장은 옳은 것인지?

Q ① 질의서 붙임 1면과 같은 방법으로 가스렌지에 호스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상 또는 시공상 문제점은 없는지?

② 설계상 또는 시공상에 문제가 없다면 사용자가 불안감 때문에 호스설치방법 개선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지역관리소의 주장은 옳은 것인지?

A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별표 7제5호에서는 연소기에 호스를 설치하는 경우 연소기까지의 호스길이는 3m 이내로 하고 호스연결은 T형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호스설치 방법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붙임 1면 사진(호스를 가스렌지 위로 설치)의 경우는 연소기 과열로 인한 호스 손상의 우려가 높으므로 붙임 2면 사진(호스를 가스렌지 아래로 설치)의 경우에 비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스기술기준 운영권 ‘민간이양’

올해 가스3법 정비완료,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가스3법 내 3,200여개에 달하는 기술기준에 대한 제·개정 권한이 민간으로 이양된다.

2004년 3월 가스안전기술심의를 통과해 지난해 7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을 확정된 가스기술기준체계 코드화 방안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표적인 규제완화 시책이다. 기술기준을 코드화함으로써 가스3법은 기술기준의 시대흐름에 따른 유동적인 변화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의 선진화된 가스안전관리체계를 신속히 도입할 수 있어 안전관리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받고 있다.

현재까지 고법, 액법, 도법은 1,028개 행정기준과 3,213개 기술기준이 혼재된 상태로 운영돼왔다. 따라서 기술기준의 성능규정화 이전까지는 기술기준의 제·개정

필요한 행정절차를 따르는데만 최소한 5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즉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기준도 법령체계 내 편제됨으로써 제·개정절차마저 △관계부처협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행정절차를 거쳐야해 정책반영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가스기술기준의 코드화를 통해 현재 법령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3,213개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고 성능기준은 정부 법령에서, 그밖에 전문성이 필요한 세부적인 기술기준은 상세기준 분류, 민간에 의해 운영키로 한 것이다.

향후 코드화가 적용되게 될 경우 상세기준의 제·개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서는 민간 기준위원회에서 제·개정된 내용을

정부가 승인한 후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 경우 기준의 제·개정에 필요한 시간은 1개월로 크게 단축된다.

가스기술기준의 코드화가 이뤄질 경우 제·개정 절차에는 필요한 경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업계의 편의, 전문성 향상과 사업자 및 사용자의 권익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신속한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며 시류에 맞는 신속한 대책도 가능해진다.

산자부는 8월까지 고법을 새로운 체계에 맞춰 우선 정비하고 11월까지 고법, 액법, 도법의 시행규칙을 차례로 개정 완료해 2007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